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6

발의연월일: 2020. 6. 8.

발 의 자:임종성·김철민·김정호

소병훈 · 김경협 · 윤후덕

윤관석 · 전용기 · 홍익표

양정숙・김윤덕・박 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,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임.

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,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시·도의회의원 1인 당 업무가 과중하고, 지방 분권 정책 확대에 따라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·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어 시·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·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·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의2(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시·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자격, 임면 절차, 직급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3조의2(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
	시·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
	지원하기 위하여 의원당 1명의
	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
	<u>다.</u>
	② 제1항의 정책지원 전문인력
	의 자격, 임면 절차, 직급 및
	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
	<u>로 정한다.</u>